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477

발의연월일: 2025. 3. 31.

발 의 자:정을호·진성준·김동아

강유정 · 김준혁 · 김문수

고민정 · 신정훈 · 차지호

한준호 · 김 윤 · 박해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·경영하는 데 필 요한 재원의 교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만 규정되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운영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산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(안 제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의 보정에 관한 사항
- 2.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
- 3.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
- 4. 제8조에 따른 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
- 5.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 과반 이상 의 위원이 사전에 동의하는 안건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

-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
 - 가. 교육부 소속 공무원
 - 나. 각 시·도교육청별 부교육감 또는 시·도교육청 소속 4급 이 상 지방공무원(장학관을 포함한다) 1명
 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행정, 교육재정, 유아교육, 초·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 - 라. 그 밖에 교육행정, 교육재정, 유아교육, 초·중등교육 관련 분 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2.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 1명
-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은 위원 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®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임·해촉 등 위원회의 구

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8조의2(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 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교부금 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 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. 1.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의 보정에 관한 사항 2.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 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.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 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4. 제8조에 따른 교부금의 조정 에 관한 사항 5.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
	<u>에 관한 사항</u> 5.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
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
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

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

 사람

가. 교육부 소속 공무원
 나. 각 시·도교육청별 부교
 육감 또는 시·도교육청
 소속 4급 이상 지방공무원
 (장학관을 포함한다) 1명

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 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 행정, 교육재정, 유아교육, 초・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
- 라. 그 밖에 교육행정, 교육

 재정, 유아교육, 초·중등

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

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

 사람
- 2.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」 제42조제1항에 따 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하 는 사람 1명
-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⑧ 위원회 위원의 제척・기피·회피 및 해임·해촉 등 위원

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

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